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연희 의원발의)

의안 번호	1990
----------	------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남연희 의원

찬 성 자: 박성근, 전종균,
고용필, 장지만 의원

1. 제안이유

성동구민과 성동구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노동권의 보호 및 증진 사업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권의 보호 및 증진사업 대상 및 사업의 구체화(안 제7조제1항)

1)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 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용어인

'노무제공자' 와 '플랫폼 종사자'로 정비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필수노동자' 추가

2) 노동권 보호 사업으로 소득지원, 사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구체적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협조부서: 일자리정책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라. 입법예고(2023. 9. 26. ~ 10.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연희 의원발의)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필수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소득지원, 사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 8. (생략)</p> <p>9. <u>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 및 프리랜서 노동권 보호 사업</u></p> <p>10. ~ 12. (생략)</p> <p>② ~ ⑥ (생략)</p>	<p>제7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산업재해보상보험법</u>」 제91조의15에 따른 <u>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2조에 따른 <u>필수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소득지원, 사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u></p> <p>10. ~ 12.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